

비봉면 1기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안)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비봉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 23.(화) ~ 2024. 2. 6.(화)
2. 모집인원 : 12명
3. 임 기 : 위촉일부터 2024. 12. 31.까지
4. 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비봉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비봉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비봉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거소지로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 사전 이수 또는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사후 이수 필수

※ 해당 교육의 이수효력은 해당 위원의 임기 내로 한다

5. 위원 결격사유

- 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나. 제9조에 따른 구성관리위원회의 위원
- 다.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 라. 법령이나 조례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증빙서류(아래표 참조)

주요내용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비봉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초본

2. 비봉면에 사업장 주소로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비봉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신청서식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비봉면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됩니다.

7. 접수방법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jisun605@korea.kr) 접수
가.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나. 접 수 처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5189-2734)

8. 선정방법 : 공개추첨

9. 추첨일시/장소 : 2024. 2. 15. (목) 14:00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세미나실

10.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지

11. 임무 및 참고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나. 주민자치회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지역 축제, 지역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활동, 교육 등
-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지역행사, 자원봉사활동 등

- 기타 읍·면·동과 관련된 지역사회활동 등

라.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특정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위원 결원 발생 시 예비순위 높은 순서로 즉시 위촉.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음

※ 예비위원의 임기는 기존위원의 잔여임기로 함

12. 문 의: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31-5189-2734

2024. 1. 22.

비봉면구성관리위원장

